의안번호	2215774
의 뢰 인	김기웅의원
회 답 일	2026. 1. 5.
추계번호	25C7448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의3 신설(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・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1인가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항) - 1. 1인가구 지원사업의 수행 및 시설 운영 - 2.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- 3.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- 4. 1인가구에 대한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관리프로그램 운영 - 5.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사업 - 6. 1인가구의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・여가 프로그램 운영 - 7.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○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.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(제4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4조의3 신설(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센터 신규 설치·운영에 따른 인건비, 사업비,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❑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이미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,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현재 지역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1인가구 대상 가족서비스 업무와의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함

○ 성평등가족부는 "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" 사업(2025년 예산 1,451억 9,700만원)을 통하여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대상 상담, 교육, 돌봄, 커뮤니티 등의 가족서비스를 이미 지원하고 있음

[표]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: 2022~2024년

(단위: 개소, 백만원, 명)

구분		2022	2023	2024
가족센터	센터 수	207	211	212
	지원단가	319.5	326.2	340.2
	지원액	31,949	32,690	34,125
	이용인원	7,166,261	8,025,965	8,767,635
건강가정 지원센터	센터 수	14	13	13
	지원단가	219	222.4	253.8
	지원액	1,095	1,112	1,142
	이용인원	391,432	433,825	449,003

자료: 성평등가족부

❑ 그러나 개정안은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1인가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설치·운영될 1인가구지원센터의 수 및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

❑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